

우리나라 特許法의 主要 正特許法을 中心으로 特許法의

V. 新規性의 摘制

1. 意義

發明의 新規性의 摘制라 함은 發明이 그 出願時를 基準으로 하여 新規性을 이미 壞失하였으나 特許法이 정한 一定한 期間內에 一定節次에 따라 特許出願을 하면 그 出願發明은 新規性이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주는 것으로서 이는 新規性 壢失의例外를 意味한다. 따라서 發明이 特許法이 정한 일정의 新規性의 摘制規定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그 新規性을 摘制받게 된다. 發明이 그 出願時를 基準으로 하여 New規性의 壢失由에 해당된다고 하여 일괄적으로 特許를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發明을 奨勵·保護·育成함으로써 技術의 進步發展을 圖謀한다는 特許制度의 본래의 目的에도 부합되지 아니하며 더우기 發明者의 意思에 反하여 發明이 그 出願前에 公開되어 그 新規性을 壢失하였거나 특별한 事由에 의하여 發明의 New規性이 壢失된 경우에는 發明者의 利益을 保護해 주어야 할 特許法上의 必要性이 생기는 것이다. 그러나 New規性의 摘制에 의하여 보호되는 發明이 不特定 多數人の 利益에 害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므로 New規性의 摘制事項에 대하여 特許法은 그 範圍를 列舉하여 규정하고 있다.

2. 新規性 摘制의 要件

New規性의 摘制要件을 충족하려면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特許出願을 한 것으로서 特許出願한 發明이 公開된 發明과 同一한 것이어야 하며 發明이 公開된 날로부터 6個月 이내에 特許出願된 發明이어야 한다. 또한 特許出願과 동시에 그 趣旨를 記載

한 書面을 特許廳長에게 提出한 후 그 事實을 證明하는 書面을 特許出願일로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自己의 意思에 反하여 New規性이 壢失된 경우에는例外로 한다.

3. 新規性의 摘制事項

1) 試驗의 實施

發明은 技術的效果를 가지고 있어야 特許性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發明을 완성한 후에 發明의 性格에 따라서 그 技術的效果의 認定與否를 試驗을 통하여 發明의 特許出願前에 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試驗의 實施에 의하여 그 出願前 이미 公開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特許法에서는 試驗을 함으로써 公知나 公開된 경우에는例外規定을 두어 特許出願前 公知된 發明이라도 保護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 特許法 제7조 제1항 제1호에 의한 試驗을 行한 경우에는 다음의 要件을 充足해야 한다.

첫째,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試驗을 實施한 것이어야 하며, 發明者 이외의 他人이 그 發明의 試驗을 행한 경우에는 그 發明은 保護를 받을 수 없다.

둘째, 試驗을 實施함으로써 發明이 비로소 公知된 것�이어야 하고

세째, 特許를 받을 수 없는 權利를 가진 者가 特許出願한 것이며

네째, 試驗을 實施한 날로부터 6個月 이내에 出願을 해야 한다.

다섯째, 試驗을 實施함으로써 公開된 發明이 特許出願한 發明과 同一한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란 發明

内容(4)

核心解說



金 永 吉

〈辨理士〉

을 公開하고 特許出願을 한 者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試驗을 實施한 者는 公開者·發明者·出願人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發明者出願人 및 公開者 모두가同一한 경우는 물론 公開者가 發明者 또는 出願인의 어느 사람과 일치하고 있을 경우에도 公開者가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正當한 權利者일 것이라고 推定할 수 있을 것이며, 發明者·出願人 및 公開者 중에서 公開者만이 相異한 경우 또는 前記한 3者が 모두 相異한 경우에는 公開時에 公開者가 實제로 特許를 받을 權利의 정당한 承繼人이라는 것을 證明하는 書類로서 증명되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書類로서 證明이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出願主義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特許法의 側面에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로 推定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다.

試驗을 實施함으로써 公知된 發明에 대하여는 그事實을 證明하는 書類를 特許出願日로부터 30日 이내에 提出하면 되는데, 그 證明하는 書類에는 試驗日·試驗場所·試驗者·試驗內容을 明示하여야 한다.

2) 出品展示

特許出願을 하기 전에 博覽會에 出品하여 展示함으로써 公知·公用 및 刊行物로 記載되어 發明의 新規性이 罷失되는 경우에도 그 出品日로부터 6月 이내에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博覽會에 出品展示한 内容과 同一한 内容의 發明을 特許出願하였을 때에는 그 發明은 新規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者는 그 취지를 기재한 書面을 出願과 同時に 제출하고 그 展示日 및 出品日字를 증명하는 書面과 出品된 發明과 出願發明이 동일한 것임을 立證할 수 있는 書類를 特許出願日로부터 30日 이내에 特許廳長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

論壇解說

이달의 目次

- V. 新規性의 摳制
- VI. 進歩性

<계속>

서 博覽會와 政府 또는 地方公共團體가 開設하는 博覽會, 政府 또는 地方公共團體의 承認을 받은 者가 開設하는 博覽會, 政府의 承認을 받아 國外에서 開設하는 博覽會 및 條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의 當事國領域내에서 그 政府 또는 그 政府로부터 承認을 받은 者가 開設하는 國際博覽會를 말하며, 出品을 증명하는 書類에는 博覽會名·主催者名·開設日·開催場所·出品种名 및 출품된 것의 内容이 명시되어야 한다.

3) 刊行物 및 文書에 發表

刊行物이나 特許廳長이 지정하는 學術團體가 개최하는 研究集會의 文書에 發明을 그 特許出願前에 早期公開시키는 것은 特許制度의 本래의 目的에도 부합되는 것이며 研究者の 發明意欲을 높여 주는데도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刊行物이나 文書에 發表하였다고 하여 모두가 新規性을 罷失하였다고 하는 것은 發明을 保護하여 技術의 進步發展을 도모하려는 制度의 肢體에서도 그 新規性을 잃은 發明이 一定條件下에서 행해진 것이라면 보호해 주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特許를 받을 수 있는 權利를 가진 者가 刊行物이나 文書에 發表하여 비로소 公知된 것은 그 發表日로부터 6月 이내에 發표된 内容과 同一한 것을 特許出願하였을 때에는 신규한 것으로 본다.

刊行物이나 文書에 發表한 發明에 대하여는 그 發明의 特許出願日로부터 30日 이내에 그 發表事實을 입증할 수 있는 書類를 제출하여야 하며 刊行物에 發表한 경우에는 刊行物名·發行年月日·發行所·該當面·發表者 및 發表된 内容 등을 明示하여야 하며, 文書에 發표한 경우에는 研究集會名·主催者名·開催日·開催場所·文書의 種類·發表者名 및 文書에 發明의 内容이 明示되어야 한다.

4) 意思에 反하는 公開

發明者の 意思에 反하여 그 發明의 特許出願前 發明

의 내용이公開되어新規性이喪失된경우에도그公開된事由는發明者の의사에反하는것이므로그發明의新規性은상실되지않는다.發明者が自己의發明의內容을스스로公開하는이유는發明을공개함으로써그分野의技術을進步發展시키고또한發明의內容을public시킨代價로써獨占排他權을부여하여주는것이特許出願制度의本래의目的이므로發明者의自己意思에反하여他意에의하여發明이公開된경우에는당연히그發明을保護하는것이特許制度本래의目的에부합되는것이다.

自己意思에反하여公開되는發明이란發明者的自發的인意思에기인되는것이아니고사기나협박등에의하거나產業스파이에의하여發明者の意思와는전혀無關한것을말한다.新規性의擬制를받고자하는경우에는前述한바와같은節次를밟아야한다.다만그에관련된立證書類를提出하는것은매우어려운것이며,그必要性이크게요구되는것도아니므로그증빙서류의제출은아니하여도된다.

4. 新規性이擬制되는基準日

新規性喪失事由에해당하는날이新規성을擬制받는基準日이된다.特許를받을수있는權利를가진者が特許出願前에出願發明을여러번公開한경우에는비록그發明이最先의公開로서新規성을擬制받을수있는경우라도두번째이후의公開에의하여新規성이喪失된다고본다.

新規성을擬制받을수있는發明이란所定의公開行為에의하여처음으로公知된發明을의미하며,두번째이후의重複된公開行為까지그發明의新規성을인정하여주는것은아닌것이다.예를들면,刊行物의初版과再版,試驗과그當日配布된說明書,同一한學會의巡回講演등은最初의公開行為만이인정된다.따라서特許를받을수있는權利를가진者が發明을公開하고그發明에관하여特許權을取得하기위해서는最先公開後에가급적신속히特許出願을함과同時に特許法제7조제2항에規定된節次를밟아야만新規성을擬制받게된다.

1) 試驗日

特許를받을수있는權利를가진者が그發明을試驗함으로써公知·公用되었을때에는그發明의出願日로부터그發明의試驗日까지新規性的遡及이인정된다.試驗이며칠걸려야하는경우라면가試驗과그當日配布된說明書에記載된경우는最先의試驗日을

基準으로한다.

2) 發表日

特許를받을수있는權利를가진者が刊行物에발표하거나特許廳장이지정하는公認學術團體가開催하는研究集會에서文書로발표하였을때에는그發明의發表日이新規性擬制의基準日이된다.또한學會發表와그講演集,同一學會의巡回的講演에는最先의發表日내지講演日을말한다.

3) 博覽會의開會日

特許를받을수있는權利를가진者が政府또는地方公共團體가開設하는博覽會및政府또는地方公共團體의承認을받은者が開設하는博覽會에出品하거나政府의承認을받아國外에서開設하는博覽會에出品하거나條約또는이에準하는것의當事國領域에서그政府또는그政府로부터承認을받은者が開設하는國際博覽會에出品함으로써發明이그出願前에公知·公用되어있는경우에는그開會日이new規性擬制의基準日이된다.

4) 當日

特許를받을수있는權利를가진者が自己意思에反하여發明의新規성을喪失하였을때에는그發明은自己意思에反하게된當日이new規性擬制의基準日이된다.

5. 新規性擬制와先願主義 및 優先權主張

新規性擬制의對象이되는發明은그特許出願일로부터發明의公開日까지新規性的判斷時點이소급되는것이다.新規性擬制를받은發明의特許出願보다도他人이먼저出願한同一發明이존재하는경우가있다.따라서同一發明에대한심사처리가문제가된다.우리나라의特許制度는先發明主義가아닌先願主義를採擇하고있기때문에新規성을擬制받은出願發明은그出願發明의出願日이실질적으로遡及되는것이아니고다만新規性的判斷時點이事由發生時까지소급되는效果에있는것이므로New規性을擬制받은發明보다도先出願된同一發明이있는경우에는New規性을擬制받은發明은先願主義의적용에의해特許를받을수없다.또한優先主張을인정하는特許出願에대하여는第1國出願한날이후에公知·公用되었다는사실에의해서는그New規성이喪失되지않으나(第42條),第2國에의出願發明의出願日字遡及은優先權이認定되는경우와같으며先願主義의적용에서도例外가되지는않는다.

6. 新規性擬制의效果

新規性의 摳制는 發明이 그 出願日을 基準으로 하여 新規性이 裂失되어 있는 것을 그 出願日로부터 6月의期間까지 소급하여 新規性을 소급시켜주는 결과로 된다. 그러나 新規性을 摳制받은 出願發明은 그 出願日自體가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新規性을 摳制받은 出願發明의 出願日보다 먼저 他人의 同一發明에 대하여 出願한 경우에는 비록 New規性을 摳制받은 出願發明의 New規性의 遷及日자가 他人의 出願日보다 앞서게 되는 경우라도 New規性을 摳制받은 出願發明은 先願主義에 의한 最先의 出願發明이 아니기 때문에 特許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V 進歩性

1. 進歩性의 意義

1) 進歩性의 意義

特許를 받을 수 있는 發明이란 發明이 新規하고 進歩性을 가지며 產業上으로 利用可能한 것이어야 한다 (WIPO 모델法 特許法 第113條) 라고 설명되어 있어 進歩性을 特許要件의 하나로 보고 있다. 우리 特許法의 特許要件을 보면 特許法 第6條제1항에서 產業上 利用할 수 있는 發明을 한 者는 다음의 사항 즉 ① 特許出願前에 國內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發明 ② 特許出願前에 國내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을 제외하고는 그 發明에 대하여 特許를 받을 수 있다라는 소위 New規性에 관한 规定을 두고 있으며 또한 特許法 第6條 제2항에서는 特許出願前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통상의 知識을 가진 者가 特許出願前에 國내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發明 또는 國内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New規性이 있는 發明이라도 特許를 받을 수 없다고 進歩性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를 進歩性이라 한다. 다시 말해서 進歩性이란 發明의 出願時에 있어서 그 技術思想이 종래의 技術水準에 비하여 發明創作上의 困難性을 말하는 것이다. 결국 發明의 進歩性이란 데 用語는 上記 特許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特許要件을 지칭하는 것이고 進歩性 判斷의 適用範圍도 特許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發明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다. 또한 實用新案法 제5조 제2항에 规定된 考察의 進歩性判斷은 發明의 進歩性 判斷基準에서 유추하게 된다. (特許廳 審查一般基準).

2) 立法越旨

法이 進歩性을 特許要件으로 한 이유는 進歩性을缺

如한 發明에 까지 排他的 獨占權을 附與하게 되면 特許權의 亂立에 의하여 技術의 進步 및 產業의 發展에 寄與하게 하고자 하는 特許法의 目的에 反하기 때문이다.

2. 進歩性에 관한 法條文의 解釋

發明의 進歩性이란 特許法 제6조 제2항에 규정된 特許要件을 지칭하며 그 進歩性의 判斷對象인 出願發明은 特許法上 發明으로서 성립되어 있어야 하며 產業上利用可能하여야 하며 New規性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出願發明에 대하여 特許要件으로서 特許法 제6조 제2항에서 「特許出願前에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가 제6조 제1항에掲記한 發明(즉 그 特許出願前에 國내에서 公知되었거나 公然히 實施된 發明 또는 國内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記載된 發明)등에 의하여 용이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일 때에는 그 發明은 特許를 받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여기서 法條文의 文句를 해석해 본다.

(1) 「特許出願前」이란 特許法 제11조의 先願主義. 同法 제49조의 存續期間満了後의 通常實施權에 규정된 「出願日 前後의 關係」와는 다르고, 出願의 時刻까지도 고려한 概念이다. 다만 優先權 主張을 隨伴하는 出願에 대하여는 優先權 主張이 인정되는 最初 出願國의 出願日을 말한다.

(2)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란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와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란 出願發明이 利用되는 產業分野를 原則적으로 말하는 것이나 이에 局限되는 것이 아니고, 그 出願發明의 構成이 지니는 機能으로 보아서 例: 분적으로 파악되는 技術分野도 포함하여, 여기서 機能이란 發明을 構成하기 위하여 採擇된 각 構成要件이 본래 가지는 技術的性能으로서 經驗의 또는 理論의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通常의 知識을 가진 者」란 出願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서 普通程度의 技術的 知識을 가진 者가 그 技術的 知識에 따라 通常의 創作能力을 發揮할 수 있는 平均的 專門家, 즉 當事者를 말한다.

(3) 「容易하게 發明할 수 있는 것」이란 公知發明과 그 發明이 속하는 技術分野에 있어서 技術의 進步程度를 감안하여 出願當時의 技術水準에서 용이하게 推考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여기서 公知發明이란 齒째, 特許出願前에 國내에서 公知되었거나 또는 公然히 實施된 發明 둘째, 特許出願前에 國내 또는 國外에서 頒布된 刊行物에 기재된 發明을 말한다. <계속>